

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유 정 희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 외 28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동 조례에서 분과위원회 명칭을 명확히 하고,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띄어쓰기 및 맞춤법 등 어문 규정 미준수 사항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조례 이해도를 높이고자 합니다.
-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
제3조 제3항 분과위원회 명칭을 “환경교육분과위원회”로 명확히 하고,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.
-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,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